

# 2024 「디지털 미술 전시지원」 공모 PT심의 결과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디지털 미술의 접근성 향상 및 작가 발굴을 위해 「2024 디지털 미술 전시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4년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의를 통해 선정된 8개 단체 중 PT심의를 통해 최종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심의개요

- 심 의 명 : 「2024 디지털 미술 전시지원」 공모 PT심의
- 심의일정 : 2024. 6. 10.(월)
- 심의위원 : 내·외부 전문가 5인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팀장
2	오혜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사
3	유원준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교수
4	주경란	퓨즈아트프로젝트 디렉터
5	조소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장

## ○ 심의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획, 구성, 성과 등 지원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li><li>○ 사업기획이 목적에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li></ul>	
수행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및 전문성</li><li>○ 프로그램의 내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li><li>○ 지원 단체의 과거 전시 실적 및 미술시장의 기여도</li></ul>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기획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li><li>○ 전시주제 및 참여작가의 시의성·차별성·참신성</li><li>○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li><li>○ 전시 파급력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의 적절성</li></ul>
	자원 활용 계획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산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li><li>○ 자원조성 계획의 수립정도 및 현실 가능성</li></ul>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 계획이 디지털 미술 시장 확장에 기여하는 정도</li><li>○ 국내 미술시장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정도</li></ul>	

## □ 선정결과 : 총 3개 단체 선정

연번	지원단체명	지원 결정액(원)
1	상업화랑	68,660,000
2	(주)유쾌한	100,000,000
3	대안공간 루프	100,000,000

※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순

### ○ PT심의 총평

전시 기획의 완성도와 담론형성의 시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음.  
 다만, 기획을 통해 시도된 담론형성의 내용들이 전시의 형태로서 연동될 필요가 있어보임.  
 기존의 시각예술에서 디지털 미술이라는 장르로 바뀌는 수준이 아닌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새로운 작가를 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전시를 진행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교부조건 :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 (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

※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선정단체별 지원 가능한 작가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 선정단체 의무사항

- e나라도움 교육 수수료 후 수수료증 제출
-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사례비(아티스트피)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 '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 사례비 구분
-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불이행 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 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융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과건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융역에 포함

-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
-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전시 운영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로 제한됨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 지원 전시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 \* 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www.k-artmarket.kr](http://www.k-artmarket.kr)' 에 게재될 수 있음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 유의사항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의 공간구성, 참여작가 및 작품, 전시/부대행사 구성 등이 실제 사업 운영과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총괄기획자 및 단체의 대표와 참여작가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단체의 소속인력은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 및 작가/창작사례비, 비평사례비, 기획사례비 등 지급 불가, 단, 대표자가 총괄기획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외
-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 예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 됨
-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2024년 6월 중

**관련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02-708-2219 / hyme9@gokams.or.kr